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67
----------	----

제출연월일 2005. 11. 29

제출자사천시장

1. 의결주문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시 관내 재학중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위하여 우리시에 청구된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학교(안 제3조)

- 사천시 관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안 제4조)

-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가능

다.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 위원장(부시장)포함 20인 이내

○ 심의대상

-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사항
-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사항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주요 토의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소요예산예산액

지원대상	학생수	1인당 지원액	급식일수	지원액	비고
관내 전 초·중·고	15,845명	300원	180일	855,636천원	
읍·면·도서벽지 지역 초·중·고	7,301명			394,254천원	
읍·면·도서벽지 지역 초등학교	4,336명			234,144천원	

- ※ 1.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은 읍·면·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 학생임
- 2. 학생수는 2005. 3월 기준임

다. 기 타

- 1) 조례제정 청구인 현황 : 따로붙임
- 2) 도내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현황 : 따로붙임
- 3)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의견 : 따로붙임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리 농·수·축산물 구입 및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도록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 경비 분담 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식품비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시장, 관련 실국장 5인이내
2. 사천시 교육청 학무과장
3. 시의회 의원 1인
4. 영양사 단체 1인
5. 학부모 단체 2인

6. 교사 단체 2인

7. 농·수·축산인 단체 각 1인

8. 시민사회 단체 2인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 목적에 따라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교육장은 식품비지원 학교의 급식에 우리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시 우리 농·수·축산물의 사용여부 등에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에 이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당 사례를 적발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이 제8조의 정산서 제출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비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①地方自治團體의 20歲 이상의 住民(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權이 없는 者는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13條의4에서 "20歲 이상의 住民"이라 한다)은 20歲 이상의 住民 總數의 20分의 1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20歲 이상의 住民數 이상의 連署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사항은 請求對象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⑥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없는 경우 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異議申請에 대하여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완료된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請求를 受理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를 却下하여 이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를 受理한 날부터 60日 이내에 條例의 制定 또는 改廢案을 작성하여 地方議會에 附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請求人의 代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⑨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8 (청구요건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9 (조례안의 작성 및 지방의회에의 부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학교급식실시학교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8조 (경비부담) ①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경비 이외의 급식에 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급식) ①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의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위탁급식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탁급식의 경우 급식비는 학부모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비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위탁계약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학교급식실시학교는 학교급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
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
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
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
2호의 경비에 한한다.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
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
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
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 청구인 현황

(단위 : 명)

계	유 호	무 호						비고
		소계	20세미만	관외거주	선거권이 없는 자	이중등재	주민번호이상	
4,418	4,068	350	14	84	18	145	89	

[읍·면·동별 청구인 현황]

(단위 : 명)

읍·면·동별	청구인 수	비고
계	4,068	
사천읍	789	
정동면	527	
사남면	155	
용현면	119	
축동면	44	
곤양면	43	
곤명면	22	
서포면	79	
동서동	304	
선구동	317	
동서금동	274	
벌용동	920	
향촌동	206	
남양동	269	

학교급식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2005.10.31현재)

시·군	조례제정		예산지원(천원)		특이사항	비고
	제정일자	발의	'05년	'06년 (예정)		
계	5개시 5개군					
창원시	'04.11.20	주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국도비 보조 시 지원 • 우수 농산물 	
진주시	'04. 4.28	주민	99,000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130원 지원 • 우수 농산물 	
김해시	'04.10.26	의원	-	81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300원 지원 • 우수 농·축·수산물 	
거제시	'05. 3.16	주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국도비 보조 시 지원 • 우수 농·수·축산물 	
양산시	'05. 7.18	의원	-	7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500원 지원 • 우수 농·수·축산물 	
고성군	'04.11. 1	주민	-	61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300원 지원 • 우수(우리) 농·축·수산물 :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남해군	'04. 9.18	주민	-	2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260원 지원 • 우리 농·수·축산물 	
하동군	'04. 8.13	의원	-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220원 지원 • 우수 농산물 	
거창군	'04.10.13	의원	200,000	2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110원 지원 • 우수 농·축산물 	
합천군	'05. 8.11	시청	-	1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1인 110원 지원 • 우수 농산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9제2항 관련)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쟁 점	검 토 의 견
○ 학교급식 지원시 우리 농산물 의무 사용 법제화의 WTO 협정 합치 여부	○ 학교급식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학교급식 지원시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거나 외국산과 우리 농산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규정들은 GATT 제3조(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법제화 곤란
○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요건 (식량원조, 환경보전 및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국내보조 지원방식)을 활용하면 국내산 의무사용 가능	○ 식량원조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만 가능 ○ 환경보전 및 조건불리지역의 경우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가능
○ 10% De-minimis 조항을 활용하면 국내산 의무사용 가능	○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식만 가능 * 조례(안)처럼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농업보조금이 아니라 보조금상계조치협정상의 금지보조금에 해당
○ 정부조달협정 관련조항을 활용하면 국내산 의무사용 가능	○ 우리나라는 도 단위이상 정부기관(중앙정부, 서울시, 직할시, 각도)은 1997년부터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국내산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없음. - 또한, 현행 학부모 부담이 대부분인 학교급식 지원형태는 정부조달 행위자체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정부조달협정 예외사항인 양곡관리법·축산법·농안법에 의한 조달방식은 제한적으로 가능함. ○ 시·군·구에 의한 직접조달방식도 가능함.
○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대법원의 WTO 협정 위반 여부 판단	○ 사법부의 판결 추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헌법의 삼권분립정신에 반함으로 대법원 판결 이전에 법령 위반여부 판단은 곤란함

- 쟁점내용을 해석할때 우리 농·수·축산물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하여 학교에 지원시 GATT/AGP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현금지원 법제화 곤란)
- 조례에서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규정 표기시 향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서 GATT/AGP협정에 위반하지않는다고 판결할 경우에도 국·도비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수 농·수·축산물” 로 수정 검토

□ 조문별 의견

- 제2조제1호중 : 적용한다 ⇒ 준용한다
- 제6조중 :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담당자 규정 삽입
- 제6조제2항중 :
 - 실국장 ⇒ 국·소장 및 담당관
 - 사천시 교육청 학무과장 ⇒ 사천교육청 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
 - 영양사 단체 ⇒ 영양사 단체 대표자
 - 학부모 단체 ⇒ 학부모 단체 대표자
 - 교사 단체 ⇒ 교사 단체 대표자
 - 농·수·축산인 단체 ⇒ 농·수·축산인 단체 대표자
 - 시민사회 단체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 추가 대상조항
 -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